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(안 §7조, §1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갖춰 오는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
- 거래비용은 높으나 접근이 쉬운* 역외선물환(NDF**)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불안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로 활용
 - * 24시간 시장운영, 고레버리지(적은 증거금으로 고액의 투자 가능) 등이 요인으로 작용
 - ** Non-Deliverable Forward : 계약-만기 시점간 차액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(RFI,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)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로 국내·외 금융기관간 경쟁기반이 조성되어 국민·기업의 외환거래 비용 절감
-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원화시장 및 원화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없음

2.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 (안 §3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국내 외환시장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외국 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상시감독체계 마련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시행령 제7조 제8에 해당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정부-중앙은행간 공조를 통해 필요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·감독 및 제재 실시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